

중남포
목포
각국조약정

중남포
목포
각국 조계 장정

조계의 정한

1 일은 중남포와 목포에 각국 조계의 제한을 곳 정하며 그디를 경영 하되 흠씩 부는 디도를 빗초여 빙거를 삼고 그 룩디 경계에 모름직이 돌을 세워 기록 하되 면에 목포 각국 조계 중남포 각국 조계 즈양을 삭이고 동서 두숫으로 창슈와 조슈가 넘 쳐 밋는 곳에 각각 흠 돌을 세우고 두숫 가온티 물가에 갓가히 흠줄 니민곳에 또 흠 돌을 세우고

바다 언덕에 마두

바다에 갓가온 언덕과 써마두에 밋쳐 모름직이 셋고 지음이 잇슬 썸에는 응당한 국 정부로 말미암아 돈을 니여 세워 문들며 밋썸을 쓰라 수리 하고 그 언덕과 마 두와 밋부근 마두에 화물을 올이고 내리는 빈쌍에 한국 정부에서 다 가히 이에 그 희관 세무판리 하는 권리를 힘하고 각항 조세를 또흐 응당 들이느거슬 엇어 면 하고 거리에 불등과 순사 하는 사건은 흠씩 조계 사무를 관리 하는 공사로 말

미얌아 베푸러 두며

쌍 죠각을 등슈 난우는것

2 이논 각국 죠계 쌍을 슬등에 난우니 데일등 쌍은 촌락과 논밭과 밋 바다가 싸에 창 슈와 조슈가 능히 넘쳐 밋치지 못 흥는디 미야 더 데을것이 업는게요 데이등은 산쌍에 미인게요 데슴등 쌍은 창슈여을에 미여 반다시 더 데을게요

쌍 죠각 디경과 터

3 삼은 한국 정부에서 죠계 사무를 관리 흥는 공스와 회동 흥야 데일 데이 양등쌍을 가져 디경과 한을 난우며 돌을 세워 괴록 흥고 후 별모양 표괴를 세고 다시 각 쌍을 가져 두번 요량 흥야 북히 흥흥 연후에 공박 흥고

데일 데삼 양등 쌍은 극히 크드리도 일천정방미돌에 지나지 못 흥고 극히 작드리 도 빅정방미돌이요 데이등 쌍은 극히 크드리도 오천정방미돌에 지나지 못 흥고 극히 작드리도 일천정방미돌이며

원갑을 관리 하는 법

4스년 후관에 실은바 회계 아니 하는것 제훈 외에는 잇는바 각국 조계안 쌍을다 벽 벽히 여러 사를을 대 할야 공박 할야 갑을 놓히 훈지 잇으며 공박 하는 사무는 한 국 정부로 말미암아 관원을 파송 할야 주장 할야 가지게 하고 곳 일커러 한국 관 원이 되고 만일 쌍 과지를 영영 사고자 하는 이가 잇스면 응당 회원으로 말미암 아 밀이 아모쌍 공박할 과약을 가져 극히 작드리도 습십일 이전에 글을 갖초아 각국서 서울에 머무는 공사 령사등과 및 항구에 머무는 령사와 및 조계 사무 관 리 하는 공스의게 지조 할야 아을나 조계안 넓고 사를 만훈 곳에 베플어 보이고 베플어 퍼야 바야흐로 가히 시행 할며

쌍 갑을 원전이 받치는 것

공박을 마치리 쌍을 산지 곳 산갑 중에 오분일을 가져 회원의게 남교 할야 정훈 은을 만들고 남적이 갑은 신척 할야 열흘 안으로 훈정 할야 다 청장 할야 비로 쇼쌍 문서를 가져 후기훈 식양을 빗초여 조희로 셋을 만드러 분별 할야 발 할야 주교 규비가 업스되 만일 그 열흘 안에 다 받치지 아니 훈족 정훈 은을 가져 공 에 처여 한국 정부에 붓치고 언약을 파 하는법도 할며

극히 작은 갑

5 온은 이에 각국 조계안 쌍에 극히 작은 갑을 빅여 미 빅정방미들을 안쇼 할야 데일 등쌍은 응당 갑이 양은전 류원이오 데이 등쌍 갑은 양은전 승원이오 데슴 등쌍 갑은 양은전 오원이니 조계 사무를 관리 할는 공스가 미년에 슈츠로 모도여 의론 할야 가히 당년에 잇디 할은 원으로 준적 할기를 결단 할야 정 할며

쌍 갑을 분발 할는 것

공박 할 후에 엇은 바 영쇼 할 쌍 조각 실갑을 극히 작은 갑으로 빅인바를 가져 공 박 비용을 지쇼 할 후 한국 정부에 고발 할 것 제 할 외에 남저지 갑은 다 총공 존 비금에 돌너 드러 보니고 일절 조계 사무를 관리 할는 공스가 설정 할기를 기다 러 곳지 발 할야 부치며

히마다 세 략

6 류은 데일 데슴 양 등 쌍 미 빅정방미들에 응당 년세로는 류원을 밧치고 데이 등쌍 미 빅정방미들에 응당 년세로는 이원을 밧치여 한국 정부에 밧치여 써 쌍세를 만들고 조계 사무를 관리 할는 공스로 말리얍아 승리 할야 티신 것과 슈단을 밧

항야 돌려 보이며 곳실상 빙거를 만들고 괴지를 공박흔 놀노 붓러 비로쇼 곳응
당세를 밧치고 수차 쌍세를 반다시 쌍문셔 주지 아니 항야셔 문셔 그히 남은
바시일을 안힘 항야 빗초여 산항야 완전이 밧친셔 후에는 미년쌍세를 일월
열흘이나 혹 열흘 압히 문져 완전 항야 밧치기를 괴약 항며

괴약이 지난 년세를 추후로 찻는것

7월은 쌍을 산사람이 만일 청장치 못흔것이 잇스면 도모지 조계 사무를 관리할신
등을 싸천거 홀씩를 만나도 천거 항는 자리에 참례 함을 엇지 못항고 또 남의
공변되히 천거 밧음을 엇지 못항고 본 장정에 허흔바 권리를 또 능히 그 리익
을 저저 밧지 못항고

만일 그 이월 일일이 전에 능히 년세를 청장 항야 밧치지 못흔즉 다시 리식을
밧치되 미 비원에 미년섭이원으로 써 계산 항야 그히 일월 일일노 좃차 괴계 항
야 만일 심이월 삼십일일에 이르러도 오히려 년세와 식은을 가져 일병 밧치지 아
니 항면 조계 사무를 관리 항는 공소가 가히 그 주판 항는 관원의게 공쇼 항고
만일 그 당단 괴한 안에 오히려 완전히 밧치자 아니 항면 공소가 가히 그 주판흔

관원을 상청 홍야 썩을 가져 비척 홍야 공에 충고 임의 비척 홍야 공에 충고
을 지닌 후에는 한국 관원이 곧 비척 날도 좇차 기홍야 다 두달 안에 본 장정
데스관에 실은 바을 안함 홍야 빗초여 삼십일을 션과 홍야 베프러 보이고 공박
법을 써 갑을 변 홍야 갑 약간을 엇으면 몬져 년세와 식은을 가져 계산 홍야 공
박일에 이르러 곳천 것과 밋 공박에 비용과 아올나 둔바 흠하 공스 별관 등항을
모도 고출 홍고 만일 남저지가 잇거든 원 주인에게로 보너여 도라가 령수 하게
하고 후실노히 티리 홍는 사름에게도 보너여 타첩 홍야 수취 하게 하며

년세를 분발 하는 것

8 팔은 조계 사무를 관리 하는 공스가 도모지 디세를 수도 훈후 다철일 안에 미 빅
정방미돌에 빗초여 그 세는 삼각식을 산 홍야 한국 수세 관원의게 보너여 써 한
국 정부에서 응당 디세 엇는거슬 삼고 남저지는 충공 존비금에 돌너 보너고 만일
년세가 기약이 지나드리도 받치져 아니 홍야 인 홍야 리식을 힘쓸지 잇스면 엇은
바 식은도 또훈 비례를 빗초여 규과 홍되 디세로 더브러 동시에 계산 홍야 붓
치며

한국 사람의 방과 집을 헐고 옮기는것

9 구는 한국 정부에서 맛당히 한국 사람이 조계 안에 잇서서 집을 더 세우던지 후시
례를 못하고 장사 지낸을 허준하지 아니 할것이니 미양 조각 쌍터를 공박 훈후에
후 조계 사무를 관리 하는 공스에 지조를 접도 할야 조계안 아모 곳에 길을 쓰코
자 할면 다 훈달안에 한국 정부에서 맛당히 그 디외 후로선안에 잇는바 한국
사람의 방과과 분중을 일병 다 헐어 옮기되 조계안에 잇는 한인의 집과 무덤인즉
장정 덩 훈후로 부터 다 잇히안에 모도 옮겨 가기를 행 하며

나무

장정을 덩 훈후로 부터 도모지 나무를 팔지 아니 할쌍이거나 후로선안에 잇는
거슬 공스의 응당 허락을 지낸을 데훈 외에는 천단히 버히고 처논거슬 엇지 못
하며

정부에서 쌍터를 머물넛다가 파는것

10 심은 만일 한국 정부에서 조계안에 잇서서 허관 판공을 처쇼를 세워 베플거나 후창
고를 세워 짓거나 멧허관에 잇서 판공 하는 각 외국 사람 머무를집도 또한 가히

스스로 혼썰을 가리워 머무를지니 다문 이에 가리워 머무는 터도 또한 응당 장정을 빗초여 년세와 추관하는 스항을 완전이 밋치는거시 각국 사름 조임 하는길 노더브리 다름이 업고

한국 관관 룬선 회사도 정훈 장정을 좇차 빗초여 또한 가히 조계안에 잇셔 쌍을 사셔 공사 방과 밋 화창등을 세워 베풀고

도모지 다른 나라 정부에 미여 흠씨 가히 상의 혼썰을 가려 사셔 써 령스 마을에 쓸거슬 세워 베풀고 다문 극히 작은 감을 빅일 바를 빗초여 쌍 감을 밋쳐 붓치되 오직 이러 혼썰 조각을 또한 응당히 장정을 빗초여 미 년세와 추관들을 완전이 밋 치는거시 다른 조각 동등에 쌍으로 더브리 다름이 업스며

누가 가히 쌍을 살것

11 십일은 모도 각국 조계안에 쌍 사는거시 었던 나라 정부든지 었던 나라 인민을 무론하고 만일 그 나라에서 서울에와 머무는 공사나 후 령스에 허락 할야 힘 흡을 지니고 본 장정을 좇차 빗초지 아니 할면 대지 조임 할야 쌍 문서를 밋아 가짐을 준수 할지 아니 할며

쌍문서를 발할야 주는 것

12십이날 발할바 쌍문서는 응당 뒤에 붓친 정식을 빗초여 한국 주판 하는 관원으로 말미암아 석장을 갖초아 만들되 산거슬 밧을 자이 반다시 일흔을 두어 문서안에 붓치여 구준하고 그 디계 석장에 훈장은 한국 정부에 두고 훈장은 그 주판훈령 스의게 보닉여 산 사람의게 굴너 보닉여 거두어 가지게 하고 훈장은 조계 사무를 관리 하는 공스의게 보닉여 칩에 올너 존안 하게 하며

디괴를 굴너 파는 것

디괴를 샳던 사람이 만일 쌍을 가져 굴너 팔고즈 하면 원문서를 가져 한국 정부 로 들너 보닉여 업식게 하고 힘써 덩흔 법식을 빗초여 새 문서 석장을 가초 만드 러 그 문서에 붓친 절결이 원문서로 더브러 갖고 샳던자이 굴너 사는자로 더브 러 반다시 다 일흔을 두어 문서안에 부치여 영영 흥 할야 직히고 오직 년세 청장 아니흔 디괴는 전단과 분단을 무론하고 다 새 문서 발급 할기를 허준치 아니 함 며 그 새 문서 석장을 논하 주며 두어 머물는것도 훈갈치 원 문서와 궤고 한 국 정부에서 응당 굴너 산자의게 향 할야 규비은 오원을 초즈 것으로

디괴를 조각으로 난우는 것

혹 디기를 가져 두 조각에 난우어 만들거나 혹 여러 조각에 만드려 써 굴너 파는
거슬 편히 향논티 이르는거시 또 향 가지 아니미 업스니 모름직이 원 조각 쌍
문서를 가져셔 도로 돌려 보닉고 써 난운 조각 새 문서를 굴너 밧구되 다만 난우
어 여는 쌍이라도 디 조각에 데살관에 덕향바 극쇼한도에 작지 못향고 오직셔
로련향 조슈가 쌍 조각이 비록 작드리도 가히 그 쌍을 가져 난와 닌여 그 이웃
에 팔아 쥬고 다만 임의 난와 닌여 굴너 판 후에 스스로 둔쌍이 오빅정방미들에
차지 못향족 모도 신동을 공거 향는 때를 만나도 그 조슈가 천거 향는 저리에
참에 향을 엇지 못향고 조각을 난운 새 문서도 향씨 반다시 원리 온 조각 쌍 문
셔의 덩식과 아올나 부계 절결을 좃차 일테히 조판 향거시니 미양 향변 난운 조
각에 쌍 문서 셔장식 세고 한국 정부에서 응당 규비는 오원을 찾고
각 조각으로 난우어 여는 쌍은 향씨 부점 지도를 밧초여 온 조각 원호에 털입 향
고 또 디 조각에 향글저 마를 더 향야 써 구별을 놓니 비컨티 온 조각의 원호가
던짜이 된즉 난운 조각의 호는 던갑 련을 던병의 류가 되고
난운 조각 디기를 조임향 사름이 다 일향을 조슈의 척 우희 기록 향고 밧는바
원리 온 조각 디기의 조슈로 더브러 갖향며

모름직이 더 세우고 만드느라 것

13 삼삼은 쌍문서 세운 날노부터 비로쇼 할야 리은 조각과 후 난은 조각 디그틀 두
히안으로 한덩 할야 방옥을 세워 두고 후 디면을 평치 할디 그 갑이 극히 작아도
이릭 오십원이오 만일 방옥을 세워 만드느라 반다시 기와로 덮흐며 후 쇠 조각이
나 후 담이나 후 쉽게 불을 익설지 아니 할거시 또 할 가 할고 석와 석과 나무 판
들 쉽게 불을 익설 물건은 다 씬을 허준치 아니 할고

만일 두히 동안에 오히려 방옥을 지어 두지 아니커나 후 디면을 평치 아니 할거
나 후 세워 만든것과 평치 할거시 우히 덩할 갑에 밋지 아니 할즉 조계 사무를
관리 할느 공스가 가히 본 장정 데칠관에 실은 바를 준조 할야 그 조슈를 맛호
주관 할느 관원의게 공쇼 할되 다만 한국 정부와 다못 각국 정부가 가리어 사느
쌍은 이 전례에 잇지 아니 할며

신동 공스를 베플러 두느 것

14 심스는 조계 사무를 관리 할느 자는 할느는 감리나 후 한국에서 파송 할야 직분을
맛게 할 관원이 되고 할느는 각 다른 나라 항구에 와 머무는 령스가 되야 아을나

조계 안 디그를 바다 산 인민중으로 말미암아 세 사름을 선택 할야 그 주관한
 관원과 다못 한국 관원을 협동 할야 일병 조계 사무를 관리 할는 신동 공스를
 삼고

선택한 세 사름 중에 한 나라를 갖치 할자는 두 사름들을 엇지 못 할고 또 조주
 의 칙칙에 임의 일홈이 잇서 기록할 자라야 비로쇼 비선 할는 반렬에 드리기를
 허락 할고 년세와 추관 등항을 청장치 못호 조주는 또호 비선 함을 엇지 못 할고
 미년 십이월에 각국 공사 령스등 덩호 장정을 준조 할야 신동을 호츄레 선택 할
 되쌍을 산자를 산쌍 조각의 다쇼는 거리세지 안코 다만 투거 할는 호구절단 허
 할며 대신 투거를 할 할는 자는 허준치 아니 할고 만일 조주가 모국 정부에 미이
 여 후 합고공스가 되거나 후 할 점이 된즉 허국 정부에서 파송할바 관원과 후 허
 공스와 할점등 파송할바 디리호 사름을 곳 임의 칙에 록명을 지낸 조주로 일레
 히 보아 대접 할며

신동 공스가 공회를 지어 할는 것

15 십오는 신동 공스가 데십스관에 실은 바를 준조 할야 베프러 덩호 후에 비겨 곳공

회를 만들고 가히 혼동할 수 있는 도장을 쓸터이니 도모지 증약과 공소등 일을 만나
 미다 증남포 목포 조계 사무를 관리 하는 공소의 일홈에 나오되 만일 피고가 된
 즉 허안의 시종을 다 한국 의부 대신에게 돌려 보시켜 각국에서 서울 머무는 공
 소령스들과 회동 할야 회심 공정을 설립 할야 심리 할되 여럿을 좇차 공변 되어
 결단 할야 못 쓰시는 안을 만들고 만일 차표와 찰유 등건을 첩발 할터이리도 그
 회심 공정에서 또 혼 가히 집행 할고 아올나 가히 원역을 차명 할야 맞겨 령을 좇
 차 일을 행 할고 신동 공소의 물입과 다 못 준비금을 혼갈 갖치 회심 공정의 비판
 을 의지 할야 발락 할며

신동 공소의 직책과 권리

16 십륙은 신동 공소가 맛당히 권악이 잇서 써 좌기 혼 각각 일을 관리 할되

- (1) 일은 가히 스스로 주석 사사 등 관원을 덩 할야 스스로 집무홀 규측을 세우며
- (2) 이는 가히 스스로 인역을 가리어 쓰음을 할야 직슈를 분명케 할고 아올나 가히
 쓸바 인역을 가져 편함을 쓰라 사양 할고 물너 가게도 할며
- (3) 삼은 도모지 조계 가온티 길을 헛치고 기천을 열며 다리를 짓고 언덕을 쌓는 등스

는 다공사로 말미암아 집행하며 밋새를 쓰라 수리 할되 오직 해변 호위 하는 언덕을 축조 함은 진실노 허쳐에 간련이 있는 조주로 말미암아 스스로 길을 가져 더 높히거나 후 곳쳐 낮게 함을 힘하려 할기를 청할즉 드는바 비용은 응당 그 조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게 하며

(4) 스는 만일 로선을 변기 할거나 후 새 길을 속첨 할거나 후 감 할야 작게 할거나 곳쳐 좁게 할는디 이르러는 일절 도형 우회 임의 실냈던지 아니 실닌 길을 가히 미리 두달 전에 뜻을 가져 베프러 보인 연후에 한국 관원과 회동 할야 들어 판단 할되 다만 길터가 극히 좁더리도 여덟미돌에서 작음을 엇지 못하고 만일 조주잇셔 써 할되 저쪽에 편치 아니흔 밋자이 잇스면 다 이 두달안에 데십오관에 덩 할 장정을 준조 할야 회심 공정에 호쇼 하며

(5) 오는 또 가히 순사를 베프러 파송 할야 써 디방을 안덩케 하며
(6) 육은 조계안에 불법 횡행 하는 무리가 잇거든 가히 가져 구류 하고 밋그 주관 하는 관원의게 자조 할야 증판 하며

(7) 칠은 거리길 각처에 등을 연덤 하며 스환을 파송 할야 쇄쇼 할야 힘써 할야 곧 밋 나고 써섯 할게 하며 도모지 형인의게 거릿김이 잇는자는 다 금 할야 제 하며

(8) 팔은 우물과 식암을 열어 썩르며 후스스로 오는 물을 설치 하여 써 조계에 우거
하는 인민의 쓸거슬 준비 하며

(9) 구는 술집과 극장과 다못 도모지 사람의 절길거슬 입아지 할 곳을 기설 흙을 만나
면 곳 조례를 명 하여 맛당히 안치 하게 하고 후 피조를 발 하여 주어 조비를 작
추 하고 출조 하는 거리슈레와 교역등도 또한 이를 빛초여 관리 하며

(10) 심은 조흔 법을 설립 하여 써 남과 내게 편 하여 흙씩 유익 하며 여러 사람이 안
화 하며 니기 하는 마당과 기성의 집과 써 밋 더러운 각 물건과 아을나 일절을
사 하여 부정할 성의를 금지 하고 아편연 집인즉 대개 열어 베플기틀 허준치 아
나 하며

(11) 실일은 그 조계안에 견고치 아니 할 방옥과 밋 불을 쉽게 익설 것과 후 질병을 쉽
게 이룰지 잇스면 모도 일개 금지 할 일 행 하고 아을나 불 쓰는 회를 설치 하여
불우를 방비 하며

(12) 십이년 신동 공수가 응당 쓸 방과 집을 가히 때를 쓰라 세워 지으며

(13) 십삼은 때에 후 관항이 군졸 하면 각국 공사 령스들의게 지니여 한국 외부 대신
과 갖치 비준할 후에 가히 조계를 가져 안함 할거슬 지어 은량을 쓰으며

(14) 십스년도모지공을 요하야 모도어 퍼의논 할거시 잇슴을 만나면 가히 미리 열 나흘 전에 사유를 가져 지단 우희 열명 하야 각 조슈의게 지쇼 하야 썸에 이르러 회에 림 하게 하며

(15) 십오년 조계안 디묘의 년세는 가히 한국 정부를 뒤신 하야 증수 하고 타실한 슈 단을 주어 돌려 보너여 빙거를 삼으며
 이상 비인바 조계 사무 관리 하는 신동 공스의 권리 십오관을 그 공스가 가히 스스로 조례를 명 하야 써 그 권을 행 할지니 어귀는 자가 잇거든 미양 혼가지 범 흥논디 벌노 그 너는 거시 극히 만흥이 이십 오원으로 써 위도 하고 벌흔바 은량은 한국 사람이던지 타국 사람을 물론 하고 응당 그 주관 하는 관원으로 말미암아 추작 하야 충공 준비금에 돌려 드려 잇는바 공스에 각 공정 거판 하는 부비와 아을너 각 관항에 기쇼 함을 함써 충공 준비금에서 지용 하고 만일 준비금이 너너지 아나 흥면 곳 공스로 말미암아 썸을 쓰라 각국 조계에 쌍 조각과 방옥시 가를 안함 하야 빗초여 미단 미간에 은량을 징추 하야 써 이 쓰는 거슬 접제 하되 다만 미년에 가히 흥 차례식만 징추 하며

쌍문서정식

17십철은 쌍문서정식과 다못부계절결이 좌와 갓홈이라

쌍문서

대한국관함

발급디계사는 조득 중남포 목포 각국 조계 디도너 디기에 데

호 위

데 등스지 계장은 미돌이오 계관은

미돌

을 임의은 원을 수도 학교 영원이

의계 조여 홍야 집

업홍노니 히 조자는 반다시 이하 벌인바 오조 장정을 준조 홈을 잇어 서로 문서
를 세워 써 빙거를 삼음이라

(1) 데일조

히인이 매년 일월 십일이나 후 십일 전에 선기 홍야 이히 세은을 완람 홍야 중남
포목포 조계 사무를 관리 홍야 신동 공스의게 보디여 한국 정부를 티신 홍야 작
수 홍야 개 홍야 며

(2) 데이조

만일 조계 공스가 응당 세은을 가추 홍야 공비로 지어 쌍을 힘 홍야 기를 만나거든

히인이 반다시 안험훈 슈를 좃차 빗초여 수랍 호고 억임이 업스며

(3) 데삼조

만일 히인이 이 디그를 가져 굴너 팔거든 다만 그 나라에서 서울에 머무는 공스
혹령스의 유행을 경야야 중남포 목포 각국 조계 장정을 준수 호는 인민과 혹
보호 호는 사림의게 조여 흠을 준허 호며

(4) 데스조

쌍문셔 세운 날노 부터 비로쇼 호야 두히로써 한명 호야 히인이 임의 이 조각
쌍터를 샷스미 반다시 잇어 괴한안에 방옥을 건취 호며 혹 디면을 가져 평차 호
되 극히 작은 갑시라도 양은전 이벽 오십원이오 만일 좃지 아니 흠이 잇슨즉 그
조각 쌍터를 조계 장정 데칠관과 다못 데십삼관을 안험 호야 빗초여 가히 잇어
한국 정부에 돌려 보닉여 거두어 맞게 호며

(5) 데오조

만일 매년 십이월 삼십일일에 이르러도 오히려 그히 응당 밧칠 년세틀 가져 장정
을 빗초여 완랍지 아니 호면 한국 정부에서 조계 장정 데칠관을 안험 호야 빗초
여 가히 잇어 디그를 가져 다시 수관 흠을 행 호며

이쌍 문서들 증남포 목포에 잇셔 석장을 지어 갖초야 향나는 한국에서 그 주판
 향는 관원이 머물너 두어 근본을 짓고 향나는 조슈를 주고 향나는 신통 공스를
 주어 책에 올려 존안 하게 향느니라

년 월 일 압

파는거슬 받거나 후굴너 디괴를 산 사람의 절결이니 쌍 문서안에
부입 함이라

구절결인 이금에 봉준 함을 인 향야 증남포 목포 각국 조계안에 데

호디괴를 사 엇어씨니 산후로 부터 원컨디 문서안에 슈명훈 각장을 빗초여 아
 을너 조계 공스의 현명파 후명훈 각규조를 좃철지니 만일 어괴는 곳이 잇거든 백
 인바 벌판들 안조 향야 원컨디 벌을 감슈 향야 사양 함이 업스리다

년 월 일 수조 후 전쇼 디괴인 성명

수조 후 전쇼 디괴인 허관 령스관 성명

장정을 경혁 향는 것

18 심팔은 이쌍 장정을 만일 응당 곳침을 힘 흘지 잇거든 응당 한국 정부로 말미암아

각각 그 주관 또는 관원과 회동하여 날이 된지가 임의 오리지 아는바 인 할것과
 혀 할것과 손 할것과 인 할 곳을 작량 하여 더 높고 작는이라

대한국 광 무 원 년

십월 십륙일 재 한양 경성 의부 회압

서력 일천 팔백 구십 칠년

대한 의 부 대 신 민 종 목 압

대일본 판 리 공 스 가 등 징 응 압

대미 흙 명 스 주 차 한 국 편 의 형 안 련 압

대아 흙 명 공 스 대 신 스 패 야 압

대법 흙 명 공 스 대 신 검 총 령 스 갈 립 덕 압

대영 흙 명 주 차 한 국 통 리 각 구 교 섭 통 주 이 전 압
 상 스 무 검 보 호 화 상 총 령 스 관

대덕 흙 명 출 스 한 국 령 스 관 구 린 압